#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76 발의연월일: 2025. 4. 3.

발 의 자: 허성무·김동아·양부남

김정호 • 김주영 • 김문수

서미화 · 김종민 · 오세희

문대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,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,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·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, 현행법에서는 기회발 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23조제6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

성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957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6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를 "「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회발전특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	제23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
지원) ① ~ ⑤ (생 략)	지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	6
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	
구의 지정 신청, 지정, 지정 변	
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	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</u>	「기회발전
령으로 정한다.	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
	<u>별법」에 따른다</u> .